

한강유역관리를 위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기본 방향 및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차 승 환
한강유역환경청장

<필자약력>

- 1968. 3 : 단국대학교 화학과
- 1975. 3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1983. 3 : 미국 Loyola Marymount 대 수학
- 2003. 10 : 서울대학교 환경CEO과정 수료
- 1980. 2 ~ 1995. 2 : 환경부 폐기물제도과, 대기관리과, 대기정책과, 수질정책과 근무
- 1995. 2 ~ 1999. 8 : 환경부 상수원관리과장, 환경조사과장, 폐기물재활용과장, 교통공해과장, 생활공해과장
- 1999. 8 ~ 2000. 3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2000. 3 ~ 2001. 3 : 환경부 환경기술과장
- 2001. 3 ~ 2002. 12 :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근무
- 2002. 12. 2 ~ 2004. 2 : 경인지방환경청장
- 2004. 2. 2 ~ 현재 : 한강유역환경청장

(‘98. 11)’의 지속적 추진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동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

2 2004년도 주요 세부계획

-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당초 목표대로 2005년도까지 2조 6,38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율을 81.6%이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국고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속적 투자
- 두 번째로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유역관리방안 마련
 - 한강특별종합대책의 5개년 성과평가(‘03. 12. 환경부) 자료를 기초하여 목표수질이 설정된 한강수계 각 구역구간의 수질평가 및 오염원 등의 분석을 통해 수질이 악화되거나 개선효과가 미진한 구간을 중점관리수역으로 선정하여 수질관리의 효율화를 극대화
 - ▶ 한강본류의 경안천, 왕숙천, 남한강수계의 달천 및 청미천 4개 수역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선정

- 세 번째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관리

- 한강수계기금 수도권 시민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조성되는 재원(년간 3,000억 원 수준)으로써 상·하류간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관련 규제로 재산권침해를 받는 주민을 지원하고 환경기초시설설치비의 지방비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 외에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이 중요

I. 한강유역관리를 위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기본 방향

1. 주요목표

- “한강특별종합대책(‘98. 11)’의 지속적 추진
 -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범 정부적 차원에서 수립한 “한강특별종합대책

▶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하류지역 물사용자가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상·하류가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Win-Win)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원(매년 700억원)하는 사업
- 정부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약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고 정부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지금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주민 전체의 편익과 주민 개개인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직업훈련소 설치, 실버타운 건설, 의료시설 설치 등 합리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도, 시·군간 연계가 필요한 광역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상류지역 주민편익의 실질적 증대 도모.

▶ 토지매수 제도개선 및 매수토지 관리의 효율화 추진

- 오·폐수 발생여부에 따라 배점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조정하여 오염부하량 및 개발가능성이 큰 토지부터 우선 매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매수를 통해 오염원의 상수원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는 한강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추진하여 수림대, 자연늪지, 생태공원등으로 자연생태계를 복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생태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

• 네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의 내실화 추진

- 무분별한 난개발등으로 상수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사전에 오염원입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의 내실화를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 유치시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관리
- 하나의 사례로 비점오염원관리시설을 이들 개발사업에 설치토록 하여 점오염원만으론 한계가 있는 수질개선을 보완

• 다섯 번째로 맑고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한 오염원관리

-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오염원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한강유역 오염원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수원보호를 위한 오염원예방활동 관리 철저
-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오염감시 파트너십」 강화

① 팔당권역 민간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환경감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한강지킴이운동본부」가 지부(8개)에 설치된 환경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임.

② 민원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등 기술자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환경관리공단)와 합동점검 추진

③ 또한 권역별(경기북부, 경기서부, 인천, 강원, 충북) 민간환경감시대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환경감시대체를 선정하여 민간 환경

감시모니터반을 구축·운영하는 등 주민과의 파트너쉽 강화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한 환경정책 수립에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① 팔당상수원은 각종 재산권을 규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여러 제도가 중복·지정되어 지역주민과의 첨예한 갈등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구성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수질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 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

• 여섯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환경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프로그램을 통해 한강수질보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이를 위하여 Eco-Academy 개설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한강생태기행 학습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일곱 번째로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 지원

- 고객중심의 선진적 행정서비스제공을 통하여 환경정보에 대한 대민 만족도를 제공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 잘하는 공무원상을 확립

II.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1. 개요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1999. 2. 8 제정)의 제정으로 오염총량제도 첫 도입

- 한강수계 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오염총량 관리제도란?

시·군 관내 하천하류지점에 수질관리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수질을 유지·달성할 수 있는 허용총량범위내에서 오염물질을 줄여가면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질오염원 규제방법

2. 한강수계 시·군별 추진상황

시·군	진행상황	용역기간	비고
광주시	용역 완료 및 시행준비	'99. 12~'01. 3 '02. 11~'03. 2 (보안용역)	• 환경부 계획(2)검토 후 보완작성 지시 ('02. 3. 30) • 보안용역 실시(환경부 유역제도과) - 경안천유역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 ('02. 11~'03. 2, KET: 29억만원) • 주민공청회('03. 7. 29) • 환경부에 승인신청('04. 12. 26) • 1차검토후 미비사항 보완요청(연구원 -광주시: '04. 2. 13) • 광주시에서 2차 보완중('04. 4월 현재) • 오염총량관리계획 보완 용역 추진 ('04. 4. 1) 용역기간('04. 4. 1~'04. 5. 3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창희 박사)
양평군	용역일시정지	'00. 12~'12. 4	• 용역 일시 정지 ('02. 10) • 사전최종보고서제출('04. 1. 26) • 최종보고서 검토 및 보완작업 중 ('04. 1. 26~현재)
남양주시	용역중	'01. 8~'03. 12	• 연구용역 완료('03. 12) • 연구용역 관련기관 협의중('04. 4월) • 연구용역 타당성보고회('04. 5월)
용인시	용역중	'01. 9~'03. 1 '03. 11~'04. 8	• 용역일시중단 후 재계 •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용역 중 •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예정('04. 5월초)
가평군	용역중	'03. 8~'05. 1	• 착수 보고회('03. 9. 19) •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예정('04. 7월)
이천시	용역중	'03. 2~'04. 6	•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예정('04. 5. 4)
여주군	용역중	'03. 11~'05. 4	• 착수보고회('04.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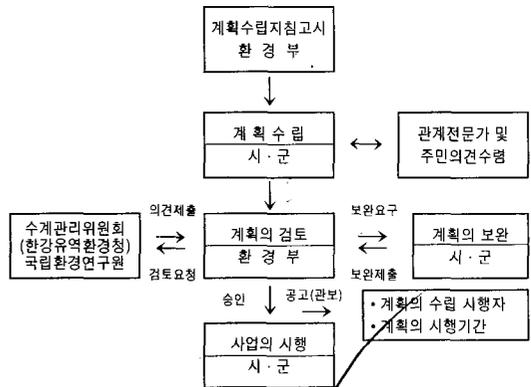
3. 예외사항

- 한강을 제외한 낙동강법에서는 오염총량제가 의무적 시행이지만 한강법은 임의제
- 한강유역지자체에서 경기도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

4. 향후계획

- 환경부 및 지자체, 민간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오염총량제가 조기에 도입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지속 추진
- 오염된 수계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방안(환경부)

5. 오염총량제 실시 흐름도



6. 4대강 수계별 총관리제도의 비교

구분	한강법	3대강법 (낙동강, 금강, 섬진강·영산강)
법적근거	한강법(제8, 9, 10조)	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법(제9, 10, 11, 12, 13, 14, 15, 16, 17조)
대상물질	BOD기본 선택적으로 COD, T-N, T-P 확대(검토)	BOD를 대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COD, T-N, T-P 확대
시행체제	계획 수립/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계획 기본방침 수립 •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이행
	승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된 총량관리시행계획(변경)승인
	평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시장·군수가 매년 제공하는 이행 평가보고서를 통해 평가
계획주기	5년	5년
집행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 시·군의 자발적 시행 (시장군수가 해당지역 부하량 할당) •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의 일부배제 • 오염총량관리 비용 등의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환경부장관또는 시장·군수가 사업장별 부하량 할당) • 할당량 초과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 및 과징금 처분 • 건축허가 제한 • 오염총량관리 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재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단 또는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량 위반 배출업체에 대한 처벌 • 해당 시·도 또는 시·군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산업단지, 관광지의 개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승인·허가 금지 • 해당 시·군에 대해 재정적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제한